

[별표 1의2] <신설 2014.2.7>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분 야 별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에너지	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석유	· 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 · 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가스	최소 운영재고 19.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정보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대상에 대한 통신기능 유지
교통수송	철도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항공	· 항공사: 1일 항공기 운행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 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항만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화물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도로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IC) 간 접근 불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기타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금융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원자력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환경	소각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매립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 [침출수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식용수		정수장(광역):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정수장(지방):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기타 분야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등은 재난발생 유형, 특성, 빈도,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기준을 정하여 유지